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998. 12. 18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8년 10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58회 정기회 제11차 위원회('98.12.1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공공시설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및 순국선열 유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마포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마포구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대하여 정함.
(안 제5조)

순위	장 애 인	65세이상노인	순국선열유족	모자가정의여성
1	장애인등급 1~2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이 매년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저소득 모자가정
2	장애인등급 3~4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미 과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3	장애인등급 5~6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마 과세대상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및 노인복지법 제 25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구의 지방 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동 조례(안) 제5조에 신문·복권판매대 등에 대하여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였고, 장애인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동일 순위에서 장애인과 모자가정의 여성 등 복수의 대상자가 경합하였을시 선정방법, 계약기간(재계약 포함) 및 계약기간중 우선 계약 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의 처리문제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보완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 별표중 제명은 입법체계상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제5조 관련)"로 하고, "모자가정의 여성"란 중 제1순위는 "거택보호자"로, 제2순위는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저소득 모자가정(자활보호대상 모자가정 포함)"으로 하여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따라 순위를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계약기간은?
- 답변요지(박왕희 사회복지과장) : 계약기간은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행정재산은 3년이하로 되어있어 규칙에서 세부사항으로 정하도록 하겠음.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계약해 놓고 양도하는 문제등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터미널등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동 조례에 해당되는지?
- 답변요지(박왕희 사회복지과장) : 조례제6조에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전승인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맞게 관리감독을 하겠으며 동 조례는 도로변에 설치된 자판기와는 무관하고 공공시설에 한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사용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요지(박왕희 사회복지과장) : 행정재산으로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받아야 됨.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장애인단체, 노인지회등 단체도 가능한지? 그리고 경합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인지?
- 답변요지(박왕희 사회복지과장) : 조례상에 단체는 빠져있고 경합의 경우 자격을 똑같이 1순위로 하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겠음.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경합의 경우를 위해 우선순위 등을 정해야 될 것 아닌지?
- 답변요지(박왕희 사회복지과장) : 규칙에서 세부사항으로 정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8.12.18. 아매숙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 [별표] 에서 장애인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제5조 관련)중 "모자가정의 여성"란의 순위를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따라 보다 세분화 하는 등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 [별표] 중 제명을 "장애인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제5조 관련)"로 한다. [별표]

○ [별표] "모자가정의 여성"란중 제1순위는 "거택보호자"로 제2순위는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저소득 모자가정(자활 보호대상 모자가정 포함)"으로 한다. [별표]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98. 12. 18.
제안자 : 시민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별표] 에서 장애인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제5조 관련)중 "모자가정의 여성"란의 순위를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따라 보다 세분화 하는 등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별표] 중 제명을 "장애인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제5조 관련)"로 한다. [별표]
- [별표] "모자가정의 여성"란중 제1순위는 "거택보호자"로 제2순위는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저소득 모자가정(자활보호대상 모자가정 포함)"으로 한다. [별표]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
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 [별표] 중 제명을 "장애인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제5조 관련)"로 한다. [별표]
- [별표] "모자가정의 여성"란중 제1순위는 "거택보호자"로 제2순
위는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저소득 모자가정(자활보호대상 모자
가정 포함)"으로 한다. [별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안					수정안				
〈별표〉					〈별표〉 <u>장애인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제5조관련)</u>				
순위				모자가정의 여성	순위				모자가정의 여성
1				모자복지법 제5조 및	1				<u>거택보호자</u>
2	(생략)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저소득	2	(원안과 같음)			<u>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저소득</u> <u>모자가정(자활보호대상자</u> <u>모자가정 포함)</u>
3				모자가정	3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1998.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사유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공공시설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마포구에 거주하는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및 순국선열유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1)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2) 마포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
- (3) 마포구지방공기업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

나.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순위	장 애 인	65세이상노인	순국선열유족	모자가정의 여성
1	장애인 등급1~2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저소득 모자가정
2	장애인등급3~4급으로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3	장애인등급5~6급으로생활보호대상자 또는미과세대상자			

3.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26조,
- 노인복지법 제25조,
- 모자복지법 제15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4. 참고사항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이하“장애인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수첩, 생활보호대상자, 순국선열유족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 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용료) 신문판매대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

[별표]

순위	장애인	65세이상노인	순국선열유족	모자가정의 여성
1	장애인 등급1~2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저소득 모자가정
2	장애인등급3~4급으로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3	장애인등급5~6급으로생활보호대상자 또는미과세대상자	-	-	